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
----------	-----

발의연월일 : 2014. 12. .
발 의 자 : 이한구박영애조계자
임정빈 의원
(찬성자 5인)

1. 제안이유

가.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에 의해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랜 휴전상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나.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나. 병역명문가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무청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모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input type="checkbox"/> 지방세기본법 <input type="checkbox"/> 병무청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⑦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규정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수수료 감면과 면제 정도의 우대를 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약할 것임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한구 의원